



## 2023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 융합연구]  
신규과제 신청요강

2023년도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3. 1.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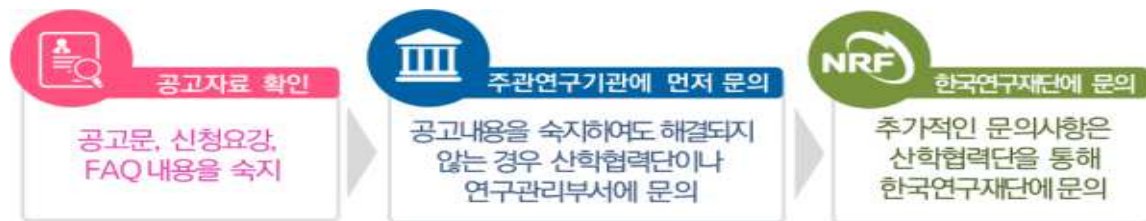
## 문의절차 및 문의처

###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 IRIS 콜센터 ☎ 1877-2041

- IRIS Q&A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 □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 ○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619, 6621, 6622, 6623

####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 과학단	생명 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창의 도전	6553	6532	6058	6545	6566
보호연구	6557	6539	6059	6542	6568
지역대학	6559	6539	6059	6542	6568
학제간융합	6553	6539	6058	6545	6566

##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23년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3. 2. 22.(수) 09:00 ~ 2023. 3. 3.(금) 18:00:00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2. 22.(수) 09:00 ~ 2023. 3. 8.(수)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3.3.3.)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 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④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KRI 연구자정보 데이터의 정보이관 동의 후 최초 1회만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의 연구자 정보는 IRIS내 NRI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매뉴얼1-2. 03-2참고]

※ KRI 연구자정보 이관 동의 후 익일에 NRI에 KRI정보가 반영됩니다. 연구자정보 이관 및 NRI 연구자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I 사업 개요

## 1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 □ 지원 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사업 목적

-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창의·도전연구, 지역·보호분야 및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

세부사업	사업목적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비전임 교원, 박사후 연구원 등)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기회 제공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국가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속 지역대학 및 학과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지원
학제간융합연구	과학기술에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접목한 융합연구를 지원하여 미래 선도형 학문 분야 발굴 및 융합 인재양성

##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 ○ 지원 분야

-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이공계 과학기술 쏠 분야
- 학제간융합연구 : 이공분야(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와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의 융·복합연구

### ○ 지원 내용

구분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선정과제수	630개 내외	10개 내외	114개 내외	4개 내외
연구기간	1~3년	3~10년(※6년 이상과제는 3+3+4이내)		3년
연구비 (간접비 포함)	7천만원 이내/연	13천만원 이내/연 ※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의무고용 (인건비는 당해년도 연구비의 20% 이상)	5천만원 이내/연 ※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추가 고용 (예정)시 최대 5천만원 (12개월 기준) 추가 지원	3억원 이내/연
간접비 비율	5%(정률)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추가지원인건비는 간접비 산출대상에서 제외

※ 정부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2년 이상 과제는 '23년도 9개월 분 연구비 지급, 마지막 연차에 3개월 분 지급

##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 1 신청 및 참여 자격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30조에 준하는 학교 및 기관*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공학분야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연구 개시일(2023.6.1) 이전 고용 예정자 신청 가능 ※ 연구 개시일(2023.6.1) 이전 정년퇴직(예정)자 신청 불가 ※ 총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외파견 불허
보호연구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대학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정부출연연구소(부설연구소 포함) 연구원,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소포함) 연구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 전임 및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POSTECH 제외
학제간 융합연구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대학에 한함) 전임교원 ※ 공동연구진은 2~3인의 異種 학문분야(재단 CRB분야) 연구자로 구성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이공학 분야 전임교원여야 함 - 핵심참여연구자(舊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 외 2인 이내로 필수 구성 하되,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임교원 1인 반드시 포함 ※ 연구책임자와 핵심참여연구자 연구업적 조건: 최근 5년간 연구업적 5편 이내

\* 고등교육법 제2조, 제30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로 설립된 대학에 한함

※ 과제 신청 및 참여자격은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

#### ○ 과제 참여연구자 구성 유의사항

구분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참여연구자 구성 (필수조건)	-	학부생, 대학원생 (석·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필수 포함	추가지원 인건비 신청시 박사후연구원 또는 박사과정생 필수 포함	대학원생 1명 이상과 박사후연구원 1명 이상 필수 포함

##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제7호에 따라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舊 일반연구지원사업)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및 장비구축 과제 (공동연구 활성화 과제는 3책5공 적용)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 (기본 원칙)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 ▶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일반트랙/국외연수트랙)), 생애기본(기본연구,재도약연구,생애첫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학제간융합연구),이공학 개인기초(기본연구)

### 예 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신규 신청 제한) 2023년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3년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먼저 신규로 선정된 개인연구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는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을 기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3.6.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4.3.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 【2023년도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학문후속세대사업 공통사항 적용】

-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외연수) 및 과기정통부 기본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 내에서는 동시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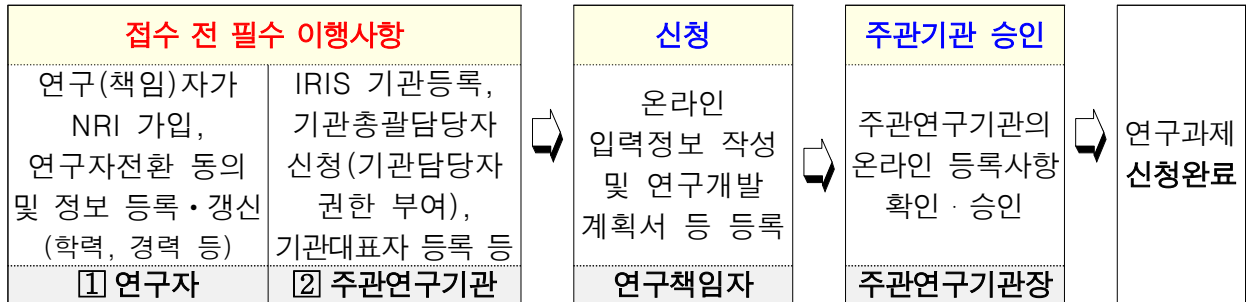


###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접속 /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연구기관 확인·승인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KRI)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으로 이관 필수(별첨 매뉴얼 1-2. IRIS 회원 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매뉴얼 참고)

#####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주관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바람(주관기관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마감일 1일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 2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 **주요 일정** : 선정평가(2023.3~5)→선정결과 공고(2023.5)→연구개시(2023.6.1.)

구 분	내 용
①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3. 2. 22(수) ~ 2023. 3. 3(금) 18:00:00 ※ 신청마감일 : 2023.3.3.(금)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신청 절차	2023. 2. 22(수) ~ 2023. 3. 8(수) 18:00:00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3.3.3.)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상기 주요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  
표지·참고문헌·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창의·도전연구기반	보호연구	학제간융합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①연구개발계획서 (5페이지 이내)	①연구개발계획서 (5~10페이지 이내)	①연구개발계획서 (5~10페이지 이내)	①연구개발계획서 (5~10페이지 이내)
-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5건 이내) 포함	-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5건 이내) 포함	-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5건 이내) 포함 * 연구책임자 및 핵심참여 연구자 각 5건 이내	-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5건 이내) 포함
②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스캔 업로드)	②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스캔 업로드)	②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스캔 업로드)	②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스캔 업로드)
			③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선택)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 분량 제한에 미포함)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IV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

### 1 평가 기본방향

#### 【 창의·도전 / 보호연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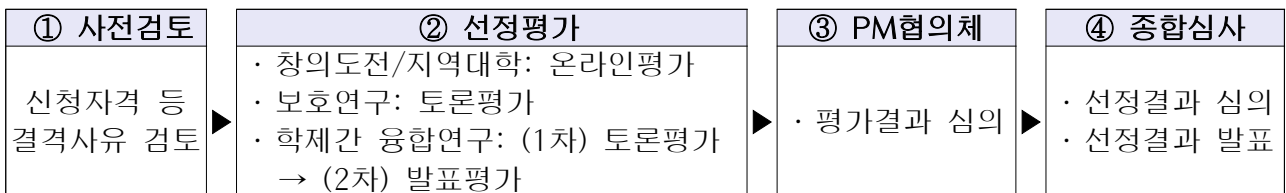
-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창의성·도전성이 높은 기초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은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박사과정생을 추가 고용 시 인력 양성 계획을 추가 점검

#### 【 학제간 융합연구 】

- 연구자 역량 및 계획 우수성 평가와 더불어 융합성 평가 실시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창의·도전적 해법을 제시하는지 종합평가
- 과학기술분야 학술적 연구성과 외에 인문사회분야의 성과를 폭넓게 인정

### 2 평가 절차 및 방법

#### □ 평가절차 및 방법



※ 학제간 융합연구의 경우, 신청과제 수에 따라 1차 평가 생략 가능, 1차 평가 시 최종 선정과제의 3배수 내외로 발표평가대상 과제 추천

#### □ 가점 제도 운영

-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성과\* 창출자가 과제 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100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 3 평가 항목 및 내용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50)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가?</li> <li>- 연구내용이 기존 연구과제와 비교해 차별적이고 도전적인가?</li> <li>-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등 연구방법이 독창적인가?</li> <li>- 연구내용과 목적이 적절하며, 연구과제 수행계획이 타당한가?</li> </ul>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연구 경력 및 실적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li> <li>-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li> </ul>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으로 얻은 연구성과의 학술적(또는 경제적/산업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가?</li> </ul>

\* 학문단 중 ICT·융합연구단의 융합분야(CRB 중 바이오·의료융합 전체, RB 중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차세대 에너지 융합분야, 교차 및 초학제 융합분야)로 신청할 경우 융합성 평가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40)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이 현안해결, 기존 지식 개선, 기존 원리의 새로운 규명,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성을 지향하고 있는가?</li> </ul>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면에서 적당하게 훈련된 연구자로서,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li> <li>-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가?</li> <li>- 연구책임자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연구업적은 우수한가?</li> </ul>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연구추진 체계(전략)가 적합한가?</li> <li>-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을 제안하고 있는가?</li> <li>- (융합분야)융합연구의 필요성, 융합성 및 적합성 포함</li> </ul>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li> </ul>
연구비 및 연구기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하였는가?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li> </ul>

\* 학문단 중 ICT·융합연구단의 융합분야(CRB 중 바이오·의료융합 전체, RB 중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차세대 에너지 융합분야, 교차 및 초학제 융합분야)로 신청할 경우 융합성 평가

○ 보호연구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보호연구 지원의 적합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한 연구주제가 보호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가?</li> <li>- 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 연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가?</li> <li>-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보호연구 결과로서 해당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li> </ul>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가 그간 수행한 연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제안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충분한가?</li> <li>- 연구책임자가 그간 수행한 보호연구 주제가 일관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는가?</li> <li>- 연구책임자가 최근 수행했던 보호연구 주제 관련 연구업적은 우수한가?</li> </ul>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하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추진전략이 우수하고 실효성이 있는가?</li> <li>-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하였는가?</li> </ul> <p>※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p>
후속 연구인력 육성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관점에서 후속 연구인력 육성이 필요한 사유가 적정한가?</li> <li>- 후속 연구인력 육성계획이 구체적이고, 해당 보호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적합한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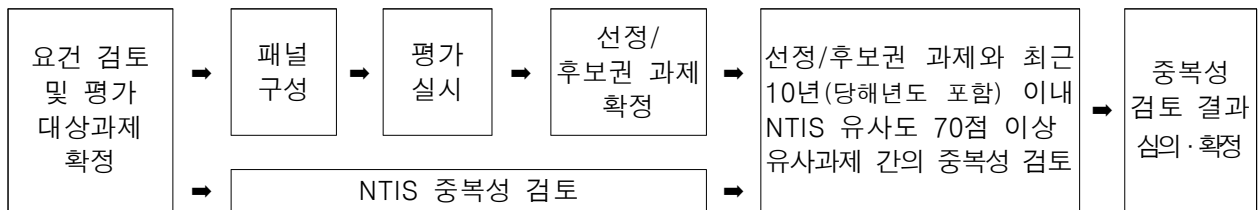
○ 학제간 융합연구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융합연구의 적합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주제(내용)가 시의적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로서 필요성이 높고, 융합연구로 수행하기에 적절한가?</li> </ul>
융합연구의 창의성·도전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구하는 연구목표가 학제간 융합에 기반하여 현안해결, 기존 원리의 새로운 규명,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 제안,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도전적이며, 변혁성을 지향하고 있는가?</li> </ul>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이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가?</li> <li>-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을 제안하고 있는가?</li> <li>- 과학기술적 지식의 진보와 함께 인문사회학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연구추진 체계(전략)가 적합한가?</li> <li>- 융합연구 인재 양성 방안은 적정한가?</li> </ul>
연구진 역량 및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핵심참여연구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 면에서 제안한 융합 연구과제를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li> <li>-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 및 업적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가?</li> </ul> </li> <li>■ 연구진 구성과 역할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제간 융합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적합한 연구지들로 구성되었는가?</li> </ul> </li> </ul>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연구 결과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가능한가?</li> <li>- 연구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인문사회·과학기술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li> <li>- 융합연구 성과의 활용방법이 타당하고,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수한가?</li> <li>- 융합연구 주제 관련, 관련 분야 연구자와 연구교류 등 네트워크 계획 및 연구 성과 확산계획이 우수한가?</li> </ul>

## 4 중복성 검토

### □ NTIS 중복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중복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교육부/과기정통부 최초 신규접수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NTIS 중복성 검토 절차 준용
  - ※ IRIS 과제 차별성 검토기능에 따라 신청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 여부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V 계속 및 종료 등 사업관리

### □ 관련 규정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 2023년도 신규 선정과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관리 수행

## 1 창의도전연구 계속 및 종료과제 지원

### □ 연차보고서 제출

- 대상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다년도 계속과제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년도 종료 30일 이내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시 차년도 연구비 집행계획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2 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계속 및 종료과제 지원

### □ 연차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년도 종료 30일 이내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시 차년도 연구비 집행계획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단계평가

- 대상 : 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총연구기간 6년 이상 다년도 계속과제
- 보고서 제출 : 단계 연구기간 종료 45일 이내 제출
- 단계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단계평가 실시
  - 연구 목표 달성 수준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차년도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 대상은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과제의 경우, 최종평가 실시
  - ※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과제 최종평가 미실시(과제 종료 시점에 최종평가 실시 대상 안내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3 학제간 융합연구 계속 및 종료과제 지원

### □ 연차보고서 제출(연차컨설팅)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년도 종료 60일 이내 제출
  -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차년도 수행계획(연구비 집행계획 포함)
- 점검지표 : 융합연구 아이디어 구체화·성과 수준,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실행 수준, 차년도 계획 및 파급 기대 효과
- 점검방식 : 전담평가단 중심으로 컨설팅 형태로 연차점검
- 결과활용 : 컨설팅 결과를 차년도 연구에 반영하고 최종평가 시 점검
  - ※ 융합연구로서의 진행이 극히 미진하고, 향후 성과 창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종단 결정 가능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평가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 점검내용 : 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방법·과정의 적절성, 연구과제의 융합성·창의성·변혁성 달성 정도, 융합연구 성과 수준
- 평가방식 : 발표평가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4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협약해약 : 각 사업별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총연구기간 중 1/3 이상 연구를 수행하면 잔여기간 지원. 단, 창의도전사업은 연구수행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병원 제외) 전임(비전임)으로 신분 변동 시 잔여기간 지원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취업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직 등 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병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학문후속세대지원, 학문균형발전지원,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 5 과제 수행 시 안내사항

- 연구기간 연장 : 연구책임자가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 (2년 이내)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 산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성과 메뉴)에 수시로 입력

## VI 기타사항

###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함.

-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국내/국외 파견 불허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6개월 미만의 파견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파견 승인

###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관련 문의 : KIRD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1588-5834)

###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 \*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지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

-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연구자가 ‘부실 학회·학술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점검 후 추진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13 적용 법령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붙임 1. 보호연구지원사업 세부설명  
2.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FAQ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연구분야 보호

□ 보호연구 학문분야의 정의

구 분	정 의
소외분야	학문의 균형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학문분야 중 실용학문 위주의 선호로 인해 소외되는 분야 또는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로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연구 지원사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문분야
연구기반 취약분야	학문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학문분야 중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학문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과제 평가 방식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야 등으로 민간부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연구 지원사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문분야

□ 보호연구 학문분야 예시

학문단	CRB(RB)	연구주제	주요 내용
자연 과학	지구 과학 (천문/ 우주 과학)	한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항성 자료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역사 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천문류초』, 『칠정산외편』 등)으로부터 항성 기록과 같은 천문학적 자료를 정리·축적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천문학, 역사학 등)의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li> <li>- 축적된 자료들은 타국 자료들과 비교 연구 및 국제적 천문 데이터 구축 가능</li> <li>- 현대 천문학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예, 초신성 또는 혜성 등)</li> </ul> </li> <li>· (보호연구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천문학’ 분야는 국내 연구자가 급감하고 있는 분야로서 학문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분야</li> <li>- ‘고천문학’ 분야 연구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li> </ul> </li> </ul>
생명 과학	기초생명 (분류/ 생태/ 환경 생물학)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멸종위기종 조름나물의 수분기작 및 세포유전학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멸종위기종 조름나물에 대해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집단내의 장주화, 단주화 비율을 조사하고, 생식구조를 해부학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우수한 개체군 증식 전략을 제시</li> <li>· (보호연구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종의 생물자원관리, 생물주권, 생물보호 및 국제적 생물다양성 확보 대응, 체계적 증보호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li> <li>- 연구 결과의 활용성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지만 해당 분야 연구 인력이 적고 연구성과를 얻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관련 저널의 인용지수가 낮아서 연구비 수혜가 어려운 분야</li> </ul> </li> </ul>

학문단	CRB(RB)	연구주제	주요 내용
의약학	기초의학 (인체 시스템 의학)	세포 내 소기관 패치클램프를 이용한 오토파지 조절 이온통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내용)</b> 오토파지(autophagy)관련 칼슘의존성 막융합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오토파고좀 패치클램프를 이용하여 칼슘통로의 조절을 연구</li> <li>· <b>(보호연구 지원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포내 소기관의 생리적 기능을 직접 연구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li> <li>- 전기생리학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 및 확장할 수도 있어 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 유지에도 기여</li> <li>- 암,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오토파지 관련질환의 이해와 치료법 개발에도 공헌할 수 있음</li> </ul> </li> </ul>
	응용의학 (병리/진단의학)	헌혈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혈소판 수명 연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내용)</b> 헌혈 혈소판 저장 시 병변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혈소판 제제의 수명을 연장하여 미래 헌혈 혈액 부족 위기 극복 방안 마련</li> <li>· <b>(보호연구 지원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헌혈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혈액 등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보존 수명 연장 연구는 소외된 편임.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 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임. 국내 헌혈은 대부분 30세 이하의 연령대에 의해 제공되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미래 헌혈 혈액의 부족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음</li> <li>- 연구의 다양성 및 균형성 유지를 위해 혈액 저장 시 발생하는 병변 연구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li> </ul> </li> </ul>
공학	기계 (응용 역학)	입자기반 해석 기법과 절단 육면체 요소를 사용한 과대 변형, 재료 파손, 유체-고체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자기반 해석 기법 중 하나인 재료입자법(Material point method)을 개선하여 정적·동적 과대 변형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li> <li>- 재료 입자와 유한요소를 결합하고 안정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상에 대한 절단 육면체 격자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 절단 육면체 요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하며,</li> <li>- 이를 기반으로 재료 손상·파손 해석 및 입자기반 유체-고체 상호작용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과 계산속도 향상 기법을 개발함</li> </ul> </li> <li>· <b>(보호연구 지원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문제에 발생하는 과대변형, 재료손상/파손, 유체-고체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은 과도한 비선형성, 격자 찌그러짐, 불일치 격자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li> <li>- 본 연구주제는 이 같은 복잡한 물리현상을 반영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 이나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국내 연구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국가자원의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li> </ul> </li> </ul>
ICT·융합연구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 공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전자 발굴 및 기술진화분석 방법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본질을 결정짓는 기술유전자를 정의하고,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의 형태 및 진화를 분석하는 방법론 제안 및 기술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기술진화 시스템 개발</li> <li>- 통합한 ‘기술진화분석 및 기술예측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외부DB 수집, 분석 프로세스, 내부 DB 및 인터페이스 등 4개의 구현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을 설계</li> </ul> </li> <li>· <b>(보호연구 지원 필요성)</b></li> </ul>

학문단	CRB(RB)	연구주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주제는 기술 진화패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분화하고 기술진화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지원 체계에서 지원 받기 어려운 분야</li> <li>-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방대한 지식과 과학기술 기법이 다학제적으로 융합되는 분야</li> </ul>

## □ 2022년도 보호연구 지원 과제목록

학문단	CRB	RB	연구 과제명
자연 과학	화학	물리화학	살아있는 세포 내 유연한 단백질의 형상과 동역학을 분석하는 방법 개발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블랙홀에 산란되는 외부장의 비선형성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블랙홀의 근접 스침 및 중력파 방출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백악기 척추동물화석 탐사와 연구
	지구과학	해양/극지과학	해양성 종속영양 미소편모류(원생동물)의 생태, 다양성 및 계통발생 통합 연구
	지구과학	천문/우주과학	NASA 400m 롤러블 블레이드형 30kg급 심우주 태양광 탐사선 후속 연구
생명 과학	기초생명	유전학	춘란의 SSR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품종 식별의 법유전학 연구
	기초생명	유전학	게잡이 원숭이에서 노화 특이적인 miRNA 동정 및 진화 유전학적 연구
	기초생명	분류/생태/환경생물학	탁란 조류의 암컷 특이적 깃털색 다형현상의 유전체학적 원인과 진화적 역사
	기초생명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바수염반날개아과(곤충강 : 딱정벌레목 : 반날개과)의 통합계통수 및 바닷가 적응 진화 연구
	기초생명	분류/생태/환경생물학	섬식물의 기원과 진화: 울릉도의 향상진화와 태평양의 분기진화 비교 연구
	기반생명	농림생태환경	산림 곤충 화학통신물질 및 후각 수용 관련 유전자 규명
	기반생명	생물공학	Klebsiella 미생물 1,2-프로판디올 생합성 대사의 이해와 응용
	기반생명	응용생물화학	한국산 딱정벌레과 곤충의 분류학적 연구
	기반생명	수산화	나노 및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한 관상어류 경구형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
	기반생명	수산화	어류 바이러스성 질병 제어용 경구 백신 플랫폼 개발을 통한 점막 면역계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다배체 작물 감자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교정 기술 고도화
	분자생명	신경생물학	파킨슨병에서 non-muscle myosin IIB 기능과 고베핵-도파민 신경회로 규명
	분자생명	신경생물학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에 의한 뇌 면역기능 이상 및 염증성 뇌질환 가속화 검증
	분자생명	감염생물학	시알릴산 이용 특화 유해균과 숙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염증 발생 기전의 유전학적 연구



학문단	CRB	RB	연구 과제명
의약학	기초의학	면역의학	인형스틸씨병의 병인기전에서 염증성 엑소좀의 역할 규명과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겟으로서의 가능성 검증
	기초의학	중양의학	단백질 안정화 분자기전 표적화 체장암 치료법 개발
	기초의학	중양의학	세포사-모사 항체의 중양세포 탐식제거 및 항암면역 기전 규명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원발성 섬모운동이상증의 레지스트리 &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및 기초연구의 플랫폼 구축
	응용의학	병리/진단의학	미래 현혈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혈소판 수명 연장 연구
	응용의학	이비인후과학	생체 제브라피시의 유모세포 disease modifier 발굴을 통한 난청 치료제 개발 연구
	치의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발생 중인 타액선의 분지형태형성기전을 모사한 타액선 재생물질의 발굴과 최적화
	치의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세포기능 및 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치아 경조직재생 연구
	한의학	응용한의학	사상의학 약물-질환 재해석 알고리즘 및 통합형 CDSS 개발과 검증
	간호학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기반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ICT 활용과 코디네이터의 건강코칭 전략 중심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고형장기이식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
약학	기초생명약학	EBV 재활성화를 유도하는 젠더 기반 생리활성인자 규명	
공학	기계	재료가공	기계가공 원리기반 고생산성 자유곡면대응형 가변형상 마이크로나노패터닝 기술 개발
	기계	설계생산	고 엔트로피 열전 전해질에 기반한 이온성 열전대와 고분해능 미세열량계 응용 연구
	기계	자동화계측	비전을 이용한 극한환경 하의 구조물 변형/진동 계측
	기계	유체공학	고정밀/고효율 난류 예측을 위한 벽모델 큰에디모사 기법 연구
	기계	응용역학	입자 기반 해석 기법과 절단 육면체 요소를 사용한 과대 변형, 재료 파손, 유체-고체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의 개발
	건설/교통	지반공학	지반역학 및 물리모형실험기법 보호연구를 통한 극한 상태의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
	건설/교통	건축구조	내진 취약 RC 건물의 전수명 주기 내 붕괴방지를 위한 기동 방지 상세 및 설계법 개발
	화공	화공재료공정	자가치유 하이드로젤 모듈의 어셈블리를 이용한 인공두피 모사체 개발
	화공	화공재료공정	메조다공성 실리카 소재의 촉매/전극/전해질 활용을 위한 내구성 증진 연구
ICT·융합 연구	컴퓨터·소프트웨어	인공지능	e스포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의 인지역량 평가 및 평가지표 프레임 워크 연구
	바이오·의료융합	뇌인지과학	한글을 읽는 뇌 연구를 통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법 개발
	바이오·의료융합	바이오소재	컨택트렌즈 흡착 및 특성 평가 모델 확립 연구
	다학제 융합·복합	교차및초학제 융합	다학문적 관점에서 전통수학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I 기본사항 (신청자격, 연구계획서 작성 등)

□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공통

1.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지역·학제간융합연구)는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 ➡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모든 과제는 3책5공 대상과제에 포함됩니다.

2. 1인 1과제 수행제한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개인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지역·학제간융합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1인 1과제 수행제한이란, 연구책임자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 연구 과제를 1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과기정통부 소관 개인연구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조항으로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기간이 신청하고자 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3.6.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4.3.31.)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일반 트랙/국외연수트랙)), 생애기본(기본연구,재도약연구,생애첫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연구/지역대학 우수과학자/학제간융합연구), 이공학 개인기초(기본연구)
- '23년 먼저 신규로 선정된 개인연구사업 과제는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 1인 1과제 수행제한 예외조건

-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3.6.1.)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24.3.31.) 신청 가능

3.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학제간 융합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외연수) 및 과기정통부 기본연구, 세종 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학제간융합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외연수) 및 과기정통부 기본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은 비슷한 성격의 연구 과제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참여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연구계획서 영문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 ➔ 신청요강의 연구계획서 신청양식에 영문으로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 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 참여연구자로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책임자는 지원자격 상실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8.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 【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공통 】

- ➡ 정부 회계기간 일치 방침에 따라, 다년도 과제(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2023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차년도(2024년) 이후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12개월로 신청합니다. (잔여 3개월 연구비는 마지막년도에 추후 지원)

(신청예시) 2년 신청인 경우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기간	2023.6.1.~2024.2.28(9개월)	2024.3.1~2025.2.28(12개월)	2025.3.1.~2025.5.31(3개월)
연구비	37.5백만원	50백만원	12.5백만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마지막연차 연구비는 직접 입력합니다.

### 【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계획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합니다. 연구기간은 **3~10년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6년 이상 장기과제는 1단계(3년)+2단계(3년)+3단계(4년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보호연구지원사업의 지원 연구비는 연간(12개월 기준) 간접비 포함 1~13천만원입니다. 단, 보호연구분야 학문후속세대 의무고용 인건비로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고용(예정포함) 인건비를 반드시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포함)의 20%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 연구비는 연간(12개월 기준) 간접비 포함 1~5천만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을 추가로 채용시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추가지원 인건비(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 연구기간 동안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의 고용이 미정이라도 향후 연구기간 내 고용(예정)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추가지원 인건비는 간접비 계상 대상이 아닙니다.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연구자가 신청 가능한 직접비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간접비 비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0. 연구개시일 이전에 이직 예정입니다. 현재의 소속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해도 됩니까?**

- 아니요, 신청하는 과제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시점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의 소속기관 정보수정 등 과제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회원정보” 메뉴에서 “소속기관정보” 수정

- 이직 예정인 기관에서의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현 기관 소속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연구비 지급까지 선정(신청) 기관으로 진행이 되며, 이후 협약변경을 통해 주관기관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과 ② 기관별 간접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관연구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11. 기존에 수행한 연구주제 및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한 연구주제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까? 타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를 알고 싶습니다.**

- 기존에 수행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http://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성이 우려될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http://www.ntis.go.kr))를 통하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제 유사도가 70%가 넘는 경우 ‘유사과제건수 -> 기수행과제’ 부분에 결과가 조회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과제 유사도가 높아 결과가 조회된다면, 해당 과제는 평가 학문단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복과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과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타 기초연구사업 신청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3년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신규사업 동일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 연구책임자 본인이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탈락된 경우 교육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13.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대학)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신청시 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국내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4.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이 가능합니까? 만약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의 총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은 불허합니다. 동 사업은 비전임 연구계층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내 연구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장기 파견 연구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 ➔ 6개월 이상의 국내·국외파견연구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은,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15.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의 연구 개시일 이전 정년퇴직(예정)자의 신청 불가 기준 관련, 대학 교원의 정년 기준은 어떠합니까?**

➔ 대학 교원의 정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임교원	만 65세	만 65세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만 65세	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기준은 「2022년 대학정보공시계획 지침서」 기준과 동일하며,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2019.8.1.)에 따라 국·공립대학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조항(정년 65세)을 준용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 16. 추가지원 인건비(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추가지원 인건비 신청 시, 신청한 총 연구기간 동안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연차별 활용인원, 인건비 금액에 대한 정보 포함)을 신청서식의 별첨1. 연구계획서 내 '붙임.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 활용실적 및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입력 항목은 추가지원인건비 연차별 신청금액만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지원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신청 시, 활용이 필요한 연차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차별 활용인원은 신청 연구비 내에서 제한없이 설정 가능합니다. 선정평가 시, 연구계획 및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해당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정 시 해당 추가지원 인건비를 반영한 총 연구비가 결정됩니다.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추가지원 인건비는 박사후연구원 및 박사과정생에 한해 지원됩니다.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자체 기준을 준용하며 자체 규정이 없을시, 석·박사통합과정 2년(4학기) 이상 이수자를 박사과정생으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박사수료생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 ➔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과제는 총 연구비와 연구비 집행계획에 추가지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7. 추가지원 인건비를 신청 시, 순수 연구비(추가지원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에서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네. 가능합니다. 추가지원 인건비의 대상은 순수연구비로 활용할 인력 외의 인력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에 대해 순수인건비와 추가지원인건비의 대상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 박사후연구원의 소속 및 직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은 지역대학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박사후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반드시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해당 소속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박사후연구원의 직급 기준은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을 제외한 비전임 교원/비정규직 연구원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하여서는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19. 박사후연구원으로 외국인 박사후연구원도 활용 가능합니까?

- ➔ 활용 가능합니다.

20. 수혜받은 추가지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 추가지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반납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지원 인건비를 수혜받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직접비 총액의 증가에 따른 직접비 집행비율이 낮아져서 연구수당 및 간접비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21. 지역대학우수과학자 A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동 사업 A과제(또는 B과제)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추가지원 인건비를 수혜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 ➔ 추가지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은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용된 인력이므로 불가합니다.

## 학제간 융합연구

22. 인문사회분야 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연구책임자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이공분야 전임



교원이어야 하며, 인문사회분야 전임교원은 핵심참여연구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연구진 구성 시, 반드시 인문사회분야 전문교원 1인 이상을 핵심참여연구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 23. 신청과제의 평가학문분야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 ➔ 학제간융합연구가 이공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융·복합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와 “인문사회학술연구 평가전문분야”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단, 융합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기초연구사업)”로 “ICT·융합연구단-(CRB)다학제융합·복합-(RB)교차 및 초학제융합” 분야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기초연구사업)은 “기초연구본부 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적용, 인문사회학술연구 평가전문분야(인문사회 연구사업)은 “인문사회본부 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적용

\* 분야분류표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에서 확인 가능

## II 과제 수행

### 1.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보호·지역)에 동료 전임교수의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합니까? 참여연구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의 참여연구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문균형발전(창의·보호·지역) 참여연구자 자격요건

- ▶ 동료교수 및 연구원(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 ▶ Post-Doc./박사급 연구원/이공계 박사과정생 · 석사과정생 · 학사과정생 참여 가능

### 2.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동료 전임교수의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합니까? 참여연구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 ➔ 전임교원은 핵심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참여연구자로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임교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임교원 외의 핵심참여연구자는 전임·비전임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핵심참여연구자 외의 참여연구자로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참여는 불가합니다.

3.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기관이 아닌 곳(예 : 지역 대학 → 공공·민간연구소 또는 수도권 대학)으로 연구책임자가 이직 시, 연구의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까?

- ➔ 총연구기간의 3분의 1 이상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이직기관이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구수행을 허용합니다.  
신규과제 신청 후 연구개시일 전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 대상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 시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4.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에는 연구교수(비전임교원)로 신청하고 연구개시 후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 과제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수행 기간과 상관없이 연구개시후(개시 시점에는 비전임교원이어야 함) 이직한 국내대학(병원 제외) 전임교원(또는 비전임)으로 신분변동 시는 잔여 연구기간을 지원합니다.

5.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 신청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 하나요?

- ➔ 연구책임자는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구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파견 신청 승인 공문
- ② 국내·외 파견연구 신청서
- ③ 국내·외 파견연구계획서 파견기관 초청편지
- ④ 소속기관동의서 및 소속기관 인사발령 공문 등

단,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은 연구기간 내 6개월 이상 파견이 불가합니다.

- ➔ 과제 수행 중 6개월 미만의 국내·외 파견 승인은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승인으로 진행합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Ⅲ 연구비 계상

#### 1.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 『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 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정산팀(042-869-7788)으로 하십시오.

※ 관련 URL: [www.law.go.kr](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 IRIS 신청용/협약용 계획서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및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별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이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Ⅳ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방법

#### 1.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 다만,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 V 과제 접수 유의사항

1.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 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IRIS로 접수 시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 ②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VI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 관련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D)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

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IRIS 관련)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3. (IRIS 관련)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 산학협력단 김OO)와 2명의 기관총괄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권한 부분은 다음 FAQ 참고

4. (IRIS 관련)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② 네. 그렇습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기관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권한만 부여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5.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②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